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31 선고 2021가단111887 판결 [매매대금등 청구의 독촉]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6.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45,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본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8. 2.경 피고에게

36,645,220원 상당의 기계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1,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945,22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34,945,220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 도달은 양수금청구의 요건이다. 갑 제3, 4호증에 따르면 2021. 3. 경 소외 회사(양도인)와 원고(양수인)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3. 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2014. 8. 2. 경 피고와 물품(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 자신도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위 계약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2014.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와 기계매매대금 36,645,220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제 '36,645,220원'의 금전을 수수하며 체결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으로 약정한 준소비대차계약(민법 제605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그 기초가 되는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채권자는 원고인 반면, 그 기초가 되는 기존 채권인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의 채권자는 소외 회사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원고가 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효력 또한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준소비대차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달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